

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[]허용 통지서
[]불허용

신청인	업소 또는 법인명			
	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			
	주소 (전화번호:)			
통지내용	당초의 기한			
	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일간)			
	연장 허용 또는 연장 불허용의 사유			

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

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[]허 용] 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[]불허용

년

성평등가족부장관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